

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」 입안계획서

1. 행정규칙명

-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」 (관세청고시 제2021-35호, 2021-03-30)

2. 개정사유

- 법령 개정에 따른 수탁기관 업무(‘심사지원 업무’로 명확화) 반영
-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[법제과-1341호 (’22.7.8)] 반영

3. 주요 개정내용

- 법령상 위임된 수탁기관의 업무를 ‘지원 업무’로 명확화
 - 위탁 업무 대상을 ‘서류심사 지원업무’ 및 ‘예비심사 지원업무’로 명확화하여 법령*의 업무 위탁 범위에 부합하도록 개정
 - * (관세법 제329조 제5항 제3호)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관세법상 근거 조항 변경 사항 반영
 - 관세법 제329조 제5항(’21.12.21), 관세법 시행령 288조 제10항(’22.2.15.) 등
- 「전자정부법」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수탁기관 지정 신청 편의 도모
 -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(신청업체 동의 필요)

< 법제처 '행정규칙 개선의견 통보 및 정비 계획 제출요청' 에 따른 사후심사 의견 >

[법제과-1341호 ('22.7.8)]

◇ 「전자정부법」 관련 규정

- 행정기관 등은 상호 간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(제4조제3항)
- 행정기관 등의 장은 수집·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가 필요한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,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(제36조제1항)
- 공동이용 가능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 정보의 종류, 범위 및 유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(제38조제1항 및 제5항)

◇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」 사후 심사 의견

- 사업자등록증 사본(제1호)과 법인등기부 등본(제2호)은 「전자정부법시행령」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고시한 「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」(행정안전부고시 제2021-48호)에서 국세청 및 대법원이 정보보유기관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(제5조제1항)
-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법인등기부 등본같이 행정기관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행정정보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.

4. 신·구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: “붙임”과 같음

5. 시행일자 : '24. 3. 14.